

의안번호	2213951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6.1.16.
추 계 번호	25D5938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장생탄광 피해자 위로금 지급,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추모공원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0억 1,800만원 등 향후 10년간 총 542억 9,100만원(연평균 108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합 계
위로금	1,820		-		-		-		-		1,820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1,846	1,883	1,921	1,959	1,998	2,038	2,079	2,120	2,163	-	18,006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	-	275	351	626
추모공원 조성·운영	5,352	5,352	5,352	5,352	5,352	1,359	1,387	1,414	1,443	1,471	33,839
합 계	9,018	7,235	7,273	7,311	7,350	3,397	3,466	3,534	3,881	1,822	54,29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위로금)	국가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1명당 2천만원 2. 장해 피해자: 1명당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무규정
2	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의료지원금)	국가는 피해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 조사·발굴·수습·봉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5	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위원회는 2035년 12월까지 존속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0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의무규정
7	안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장생탄광 강제동원 발생장소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37조(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정부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피해자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38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추도공간 등 위령사업,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위로금)	○	
2	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	현 시점에서 미수금피해자의 규모, 피해액 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3	안 제6조(의료지원금)	×	현 시점에서 의료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안 제8조(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	

5	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	
6	안 제20조(사무국의 설치)	○	
7	안 제23조(피해진상조 사 방법 등)	×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진상조사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유해발 굴을 포함)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 으나, 조사장소가 국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예측이 곤란함
8	안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	
9	안 제37조(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해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10	안 제38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2007.1.)를 바탕으로 136명으로 가정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9.6. 시행)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조사기간 중 ‘노무자 동원 분야’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장생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음

[참고자료] 장생탄광 수몰사고 개요

□ 안 제7조1)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1) 제정안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은 위로금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45명)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위로금 총액에서 234만원을 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인원 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고려하지 않음

□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함) 운영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라 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하되 제정안의 진상규명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제외함

□ 안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소요는 여수·순천 10·19 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전문임기제 3인 추가 채용)과 발간비용을 준용하고, 기획단은 존속기간 종료일(2035년 12월 31일) 1년 전 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38조의 위령사업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된 예산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 승률³⁾을 적용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9조 및 제35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35년 12월까지로, 결과보고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로 함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 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 19조에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존속기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건비 등은 6개월분만 반영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로금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은 희생자 136명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45명을 제외한 91명으로 함
 - 보상금은 안 제4조제1호에서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⁴⁾
- 안 제27조에서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⁵⁾ 보상금은 2027년에 전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위로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7년에만 발생하며, 18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 (총 소요) 91명 × 2,000만원 = 18억 2,000만원

[표 2] 위로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위로금	1,8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비(사무국 운영비 포함)는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예산을 준용함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은 48억 400만원이며,

4) 제정안 제4조(위로금) 국가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2천만원(이하 생략)
5) 제정안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의 진상규명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등의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17억 7,600만원으로 해당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함

[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2025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예산액	제정안의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사업 여부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전문임기제 인건비	362	○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문임기제 인건비	226	×
상용임금(기간제근로자)	124	○
여순사건위원회 회의 운영	227	○
위원회 운영 경비	1,062	○
손실보상금(의료지원금 등)	136	×
진상보고서 발간	170	×
여순사건 관련 연구용역 추진	250	×
실무지원회 지원(지자체 보조)	2,246	×
계	4,804	1,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4,600만원 등 향후 10년간 180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 진상규명위원회는 2035년까지 존속하므로 운영비는 2035년까지 발생

[표 4]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1,846	1,883	1,921	1,959	1,998	18,006
	2032	2033	2034	2035	2036	
	2,038	2,079	2,120	2,16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결과보고서 작성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소요는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전문임기제 3인 추가 채용)을 준용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종료일(2035년 12월 31일) 1년 전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35년부터 발생함

- 진상규명위원회 존속기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36년의 운영비는 6개월분만 반영
- 결과보고서 작성비용은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비용(170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추계 결과, 안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5년 2억 7,500만원, 2036년 3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결과보고서 작성: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결과보고서 작성	-	-	-	-	-	626
	2032	2033	2034	2035	2036	
	기획단 운영	-	-	275	140	
	보고서 발간	-	-	-	211	
	계	-	-	275	3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모공원 조성·운영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안 제38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소요예산을 준용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에는 2006년~2010년 5년의 사업기간동안 총사업비 19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관리운영비용은 2026년 예산 12억 700만원이 반영되었음
-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동일하게 추모공원 조성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관리운영 예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추모공원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3억 5,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총 338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추모 공원 조성·운영: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추모공원 조성·운영	5,352	5,352	5,352	5,352	5,352	33,839
	2032	2033	2034	2035	2036	
	1,359	1,387	1,414	1,443	1,471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0억 1,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총 542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합 계
위로금	1,820		—		—		—		—		1,820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1,846	1,883	1,921	1,959	1,998	2,038	2,079	2,120	2,163	—	18,006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	—	275	351	626
추모공원 조성·운영	5,352	5,352	5,352	5,352	5,352	1,359	1,387	1,414	1,443	1,471	33,839
합 계	9,018	7,235	7,273	7,311	7,350	3,397	3,466	3,534	3,881	1,822	54,2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장생탄광 수몰사고 개요

비고	내 용
장생 탄광 연혁	·야마구치현 우베시 요시키군 니시기와촌 도쿄나미에 위치 ·현재는 탄광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배기·배수통 두 개 만이 흔적을 남김 ·1932년 11월 본갱 개광(경영자: 야마다 신마쓰, 라이손 후치노스케) ·1942년 2월 3일 수몰사고 발생(본갱 폐쇄) ·1942년 6월 제2갱(장생탄광에서 도쿄나미역 방향에 위치) 개광 ·1942년 11월 제3갱(본갱 서쪽에 위치한 구로사키쪽) 개광 ·1945년 폐광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동원자 수) 총 1,630명 동원 계획 중 실제 1,258명 동원 ·(출신지) 경상북도 군위, 영천, 영덕과 경상남도 사천, 고성에 집중 ·(노무 실태) - 채탄부는 2교대로 투입: 6시부터 16~17시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4~5시까지 - 모두 기숙생활이 강요되었으며, 감독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됨 - 탈출 시 구타 등의 제재가 가해짐
사고 경위	·(일시)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사고내용)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본갱 약 1,010m 지점에서 갱내로 해수가 침투해 들어와 갱 전체가 해수에 잠기며 광부 180여명 사망 ·(사고원인) 버팀목의 지나친 제거, 채탄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채탄 등 무리한 조업 - 1905년 타 탄광에서 해수침수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오카광산감독서는 해저채굴제한을 시달하였는데, 장생탄광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함
사고 처리	사고 후 얼마 안되는 시간에 갱구를 널빤지로 봉쇄, 사고 발생 며칠 후 탄광회사에서 위패를 제작하였으며, 일종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음

자료: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를 바탕으로 재구성